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의3 중 "8천만원(수도권은 1억3천만원)"을 "1억원(수도권은 1억6천만원)"으로 한다.

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6호 및"을 "제6호, 제9호 및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"소형·저가주택"을 "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소형·저가주택"으로, "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"을 "소유하고 있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)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(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)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7의2. (생 략)	1. ~ 7의2. (현행과 같음)
7의3. "소형·저가주택등"이란	7의3
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	
서 별표 1 제1호가목2)에 따른	
가격이 8천만원(수도권은 1억	<u>1억원(수도권은 1억6천</u>
<u>3천만원)</u> 이하인 주택 또는 분	<u> 만원)</u>
양권등을 말한다.	
8. ~ 10. (생 략)	8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	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
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	
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	
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	
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	
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,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	
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무주택세	
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	
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「공공	
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6	
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(분	
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	

다)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,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.

- 1. ~ 8. (생략)
- 9. <u>소형·저가주택</u>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<u>소유한 세대에</u>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

10. · 11. (생략)

제6호, 제9호 및 -
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
<u>가 소형·저가주택</u>
<u>소유하고 있는</u> -

10. · 11. (현행과 같음)